

『구미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보조금 기준액의 범위를 확대하여 학교교육지원 등 교육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필요한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보조사업의 범위 구체화(안 제2조)
 -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
 -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
 -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
- 보조금 기준액의 범위 확대 (안 제3조제1항)
 - 시세수입액의 1000분의 20 → 시세수입액의 1000분의 30

4. 참고사항

-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 제11조제6항
- 「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」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

- 교육도시 환경조성 지원을 강화하고자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보조하는 보조금 기준액의 범위를 확대하고
- 상위법령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는 개정 조례안 임

○ 주요 개정내용은

- 보조사업의 범위를 학교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, 학교 교육과정 운영지원에 관한 사업 등으로 구체화 하였고
-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기준액의 범위를 시세 수입액의 「1000분의 20」에서 「1000분의 30」으로 확대 조정하는 내용임

○ 조례안 검토결과

- 본 개정 조례안은 제128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으나 부결된 조례안 임
- 2008년도부터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교육경비 지원을 학교별로 지원금액을 확대함은 바람직 하다고 판단되나
- 보조금 지원 기준액의 범위를 시세 수입액의 「1000분의 30」으로 확대 조정함이 타당한지의 여부를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됨